

19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

의안번호	42
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6. 12. 14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'96. 11. 21 제출한 '97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국·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☐ 예산규모

○ 총 규 모 : 365백만원(87,954→88,319백만원)

○ 일반회계 : 365백만원(70,678→71,043백만원)

☐ 일반회계

○ 세입예산

· 세외수입 : 444백만원(15,304→15,748백만원)

· 국시비보조금 : △79백만원(16,706→16,627백만원)

○ 세출예산

· 경상경비 : 11백만원

· 투자사업비 : 354백만원

'97 歲入歲出 修正豫算案

1. 編成基準

- 세입예산은 시세, 사용료등의 징수교부금 및 국·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,
- 세출예산은 추가세입 등에 따라 기정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비 및 주요경상비 조정

2. 豫算規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정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
합 계	88,319	87,954	365
일 반 회 계	71,043	70,678	365
특 별 회 계	17,276	17,276	-

3. 一般會計 修正豫算案 概要

○ 세입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정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
계	71,043	70,678	365
지 방 세	19,443	19,443	-
세 외 수 입	15,748	15,304	444
조 정 교 부 금	17,975	17,975	-
보 조 금	16,627	16,706	△79
지 방 채	1,250	1,250	-

○ 세출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정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
계	71,043	70,678	365
일 반 행 정	25,513	25,470	43
사 회 개 발	31,100	31,135	△35
경 제 개 발	13,139	12,782	357
민 방 위 비	226	226	
지원및 기타	1,065	1,065	-

4. 一般會計 修正豫算案 細部內譯

□ 歲 入 ————— 365百萬元

○ 세외수입 ----- 444백만원

- 시세징수교부금 (2,491 → 2,745) 254
- 도로하천사용료 (666 → 828) 162
-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(85 → 108) 23
- 교통유발부담금외 2건 (20 → 25) 5

○ 보 조 금 ----- △79백만원

-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 △89
- 음식물쓰레기퇴비화용품(106 → 85) △21
-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(32 → 40) 8
- 동네체육시설 설치 (27 → 50) 23

□ 歳 出 ----- 365百萬元

○ 경상경비 ----- 79백만원

- “사하”화보집 발간(3,000부) 25
- 문화의 달 행사(화첩, 포스터) 5
- 청원경찰 직급보조비(7명) 8
- 통신회선증설 및 장비(5회선, 전화기 16대 등) 7
- 동 소각장 관리인부(100일→208일) 17
- 예비군 관련경비 등 17

○ 국·시비보조사업 ----- △68백만원

-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 △89
- 음식물쓰레기퇴비화용품(발효통, 발효제) △43
-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(추가) 17
-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(2개소 → 4개소) 47

○ 투자사업 ----- 354백만원

- 낙동로~괴정천간 도로개설(50m→90m) 354